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·회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O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확대에 따라 신분증의 진위확인 및 사본관련 규 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O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확인 및 사본의 생성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기관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을 규정함(안 3. 나.)
- O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규정함(안 3. 다.)
- 3.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·회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

4. 신 ·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·회수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·회수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3.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- 가.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·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의 사진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,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한다.
- 나. 모바일 신분증(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)이 제시되는 경우 공탁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하고, 검증시스템의 전산장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 (「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」별지 제20호 양식)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할 수 있다.
- 다. 나호에 따른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.
 - 1) 모바일 주민등록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모바일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

국내거소신고증 등: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사본저장 시스템 (https://ive.mobileid.go.kr)

2)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: 나의 변호사(https://www.klaw.or.kr)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

3.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 · 회수청구 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 서의 사진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 히 확인하여야 하고,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 록에 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신 분에 관한 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에는 신분확인서(「공탁사무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」 별지 제20호 양식)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 야 한다.

3.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 가.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 호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 · 회수청 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 명서의 사진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 저히 확인하여야 하고,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 록에 철하여야 한다.

> 나. 모바일 신분증(「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 된 신분증)이 제시되는 경우 공탁 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하고, 검증시스템의 전산장애 등

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 (「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 규」별지 제20호 양식)를 해당 공 탁기록에 철할 수 있다.

다. 나호에 따른 신분증 발급기관이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.

1) 모바일주민등록증, 모바일운전면허증, 모바일외국인등록증,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등:모바일신분증진위확인사본저장시스템

(https://ive.mobileid.go.kr)

 2)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: 나의

 변호사(https://www.klaw.or.kr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원행정처 사법등	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
연락처	(02) 3480 - 1877